

---

# 신종·유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



**행정안전부**

# 신종 · 유사 어린이놀이시설

## I 신종 · 유사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놀이기구(그네, 미끄럼틀 등)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장소로 별도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로
  -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키즈펜션, 키즈풀빌라 등이 있음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키즈펜션·키즈풀빌라

### < 참고. 어린이놀이기구(예시) >



< 그네 >



< 미끄럼틀(독립형) >



< 정글짐 >



< 공중놀이기구 >



< 흔들놀이기구(시소) >



< 흔들놀이기구(A형) >



< 오르는기구(평행봉) >



< 오르는기구(능철) >



< 오르는기구(철봉) >



< 오르는기구(암벽) >



< 회전놀이기구 >



< 건너는 기구(구름다리) >



< 조합놀이대(일반형) >



< 조합놀이대(물이용형) >



< 스페이스네트 >



< 폐쇄형놀이기구(실내) >

## II

### 현행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차이점

#### □ 어린이놀이시설이란?

- 어린이놀이기구(그네, 미끄럼틀 등)가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의 장소(초등학교, 도시공원, 주택단지 등)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을 말함

#### □ 신종·유사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차이점

구분	어린이놀이시설	신종유사 어린이놀이시설
관계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없음
설치근거	20개 개별 법 * 주택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영유아보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없음
설치지역	놀이제공영업소, 병원, 아파트, 공원, 학교, 유치원 등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키즈펜션 등
종류	그네, 미끄럼틀, 흔들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등 13종(56개유형)	정형화된 기구가 아닌 별도 시공을 통해 설치된 구조물(수영조, 미끄럼구조물 등)
이용대상	어린이	어린이
안전 및 유지관리	공산품 안전인증 획득	안전 및 유지관리 의무 없음
	(최초)설치검사	
	정기검사(2년)	
	자체 안전점검(매월)	
	보험가입	
	안전교육(2년에 1회)	
사고조사 및 보고	중대사고 발생 시 즉시 사용중지 및 통보, 안전 침해여부 판단 후 개선 또는 철거	사고조사 및 보고 의무 없음

## III

### 안전관리 필요성

- 어린이놀이시설과 다르게 어린이놀이시설법의 각종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될 우려가 있음
- 새로운 유형으로 생겨나는 어린이 놀이활동 공간에서의 사고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관리조치 필요

⇒ 놀이공간 전반의 사고위험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안전성평가” 도입

# 신종·유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절차

구분	절차	실시주체	주요내용
설치 단계	어린이놀이시설 해당 여부 확인	관리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판단기준) 어린이제품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그네, 미끄럼틀 등)가 설치된 실내외 놀이터로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장소</li> <li>▶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른 안전관리 절차(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점검 등) 준수</li> <li>▶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지 않지만 어린이놀이 활동에 활용되는 경우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당</li> </ul>
	놀이시설 등록 (향후 도입)	설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리감독기관(놀이시설 소재 시·군·구)에 등록 요청</li> <li>▶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에서 신고서 다운</li> <li>※ 설치검사 시 관리감독기관이 부여한 시설번호 필요</li> </ul>
	어린이활동공간 검사	설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닥재 등의 환경유해인자 노출 평가(근거: 환경보건법)</li> </ul> </li> <li>▶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어린이활동공간 검사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실, 교실, 학교도서관, 키즈카페, 놀이방(완구방) 등</li> </ul> </li> <li>▶환경부 지정 검사기관(붙임 2)에 검사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공간을 33㎡ 이상 증축, 70㎡ 이상 수선한 경우에도 수검 필요</li> </ul> </li> </ul>
	설치 시 안전성평가	설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성평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실시</li> </ul>
운영 단계	안전관리자 지정	관리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를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로 임명하지 않은 경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가 됨</li> <li>※ 시스템 개선 이후 시스템에 안전관리자 등록</li> </ul> </li> </ul>
	안전교육 (향후 도입)	안전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li> <li>▶②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li> <li>▶③안전교육 유효기간(2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교육 이후 2년에 1회 이상 교육 이수(교육기관은 붙임 6 참고)</li> </ul> </li> </ul>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권고 사항)	관리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가입(붙임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장내용) 놀이시설에서의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보장</li> </ul> </li> </ul>
	사고보고 (권고 사항)	안전관리자 (관리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붙임 8) 발생 시 즉시 관리감독기관(놀이시설 소재 시·군·구)에 통보</li> </ul>
	안전성평가	안전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성평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월 1회 이상 실시</li> </ul>

※ (붉은 글씨) 시스템 개선이나 안전성평가 법제화 이후 도입 예정인 사항  
 (푸른 글씨) 법제화 예정이나 시설 안전을 위해 미리 시행을 권고하는 사항

# 안전성평가

## I 안전성평가란?

- 어린이놀이시설 외에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활용되는 장소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사전적으로 찾아내고 그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

- 무인키즈풀, 非검사대상 놀이기구, 놀이에 활용되는 구조물 등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른 안전검사, 안전점검 등의 대상이 아닌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 아동발달에 기여하고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허용 가능한 위험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로 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님

## II 안전성평가의 도입 취지

- 최근 설치형태가 다양하고 보다 창의적인 놀이형태를 추구하는 신종 놀이공간이 증가하고 있으나,
  - 인증받은 어린이제품으로 제조·설치되지 않으면 현행 놀이시설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형태가 표준화된 제품·시설에 적용되는 정량화·수치화된 안전기준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존재
- ⇒ **다양한 시설·환경적 변화를 반영하여 신종 놀이공간에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 필요**
- 시설안전기준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잠재적인 사고위험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필요

- 놀이터에서의 사고는 놀이기구 자체의 시설적 결함 외에도 환경적 요인(내외부 부대시설)이나 관리적 요인(안전수칙 안내 미흡) 등에 의해 발생
- 미국·유럽 등에서도 정량적인 놀이기구 안전기준의 한계를 인정하고 놀이터에 대한 관리 주체의 위험가치평가(Risk-Benefit Assessment)를 도입하고 있음

### Ⅲ 안전성평가 개요

#### □ 평가 주체 : 관리주체(사업주)

○ 신종 놀이공간의 경우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이 놀이공간의 구조와 형태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이용빈도나 유형, 내부 구조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업주가 수시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

- 위험요소를 인지하는 것이 안전 확보의 첫걸음이며, 놀이공간 내의 위험요소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관리주체(사업주)임 ⇒ 놀이공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관리
- 안전성평가는 시설 관련 전문지식이 없이도 놀이 유형을 바탕으로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나, 시설 규모가 크거나 동선이 복잡한 놀이공간은 놀이 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분야 전문기관의 자문을 보충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 평가 대상

○ 어린이놀이에 활용되는 공간 중 어린이놀이시설법,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설(무인키즈풀, 키즈펜션 등)



○ 아래 시설은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성인휴식공간, 놀이목적이 아닌 취식공간, 체험시설 등
- 놀이목적의 고정된 설치물이 없는 놀이공간(예시: 완구방 등)
- 어린이놀이기구, 유기기구 등이 설치되어 이미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인 시설

		
키즈카페 내 식음료 공간	완구방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소

**< 참고 1 : 어린이놀이시설법 상의 놀이시설 >**

- |                       |                        |
|-----------------------|------------------------|
| 1. 목욕장(찜질방 등)         | 11.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 2. (고속도로 등의) 휴게소      | 12. 학원                 |
| 3. 도시공원               | 13. 놀이 제공 영업소(키즈카페 등)  |
| 4. 식품접객 영업소           | 14. 종교시설(성당, 교회 등)     |
| 5. 아동복지시설             | 15. 주상복합 건축물(100세대 이상) |
| 6.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 16. 야영장                |
| 7.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 17. 공공도서관              |
| 8. 대규모점포(백화점, 대형마트 등) | 18. 박물관                |
| 9. 의료기관(병·의원 등)       | 19. 자연휴양림              |
| 10. 주택단지              | 20. 하천구역 또는 하천시설       |

※ '26. 12.18일부터는 과학관, 수목원·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원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 시설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음

**< 참고 2 : 유원시설업의 종류 >**

- **종합유원시설업**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
- **일반유원시설업**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
- **기타유원시설업**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 (안전성검사) 종합·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사설·기구에 대하여 안전성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상태를 검사받는 것(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평가와 구분 필요)

- 관리주체는 놀이시설 이용개시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www.cpf.go.kr)을 통해 놀이공간 및 유사 놀이기구를 관리감독기관(관할 시·군·구)에 신고·등록

- 신고·등록정보 : 관리주체(사업주), 시설명(상호), 놀이공간 면적, 설치물 (유사 놀이기구) 현황 및 설치일자

☞ 법 개정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을 활용하여 신고·등록(설치자 정보는 선택사항, 사진 포함하여 시스템에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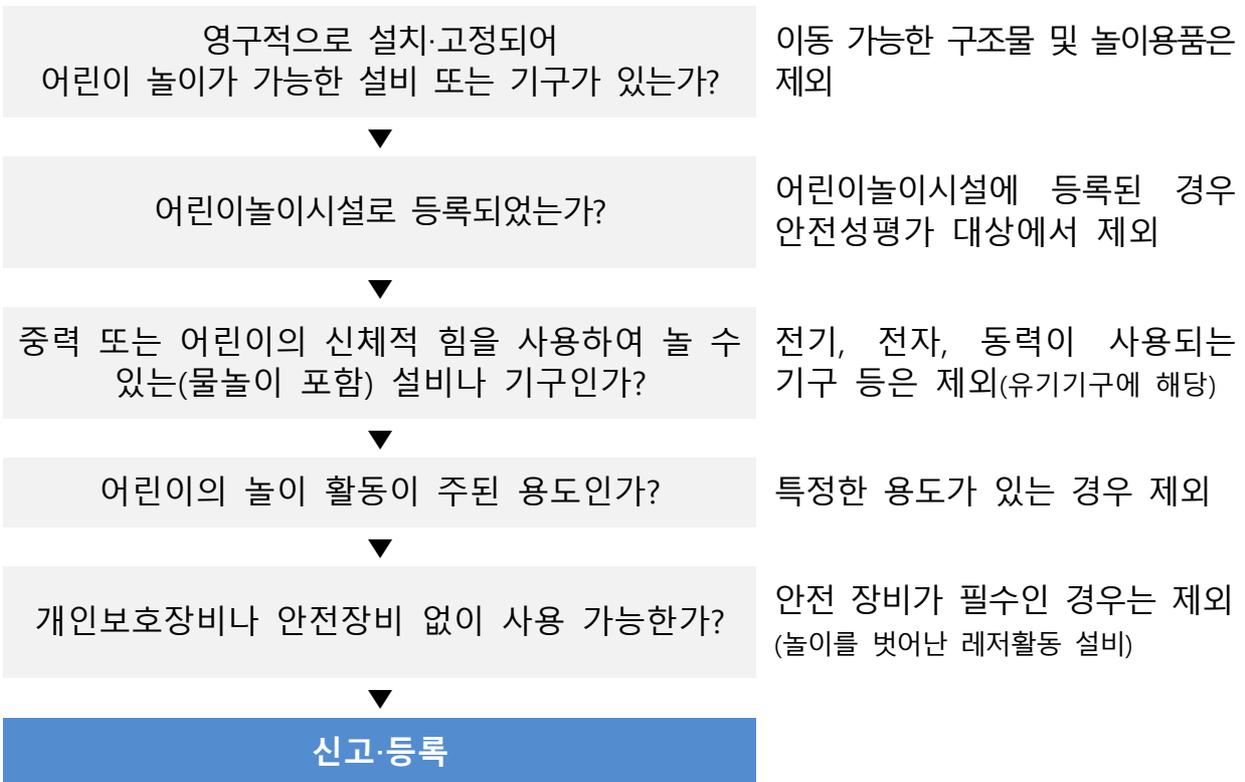
☞ 시스템에 신고·등록할 수 있도록 '25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기능개선 예정

- 고정 설치된 유사 놀이기구는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지도·감독을 위해 시설 신고·등록시 상세정보(설치일자, 설치사진) 입력

■ 신고·등록 및 평가 대상

- ① 안전인증대상 어린이놀이기구 → 신고·등록(입력) ○, 안전검사
- ② 어린이놀이기구는 아니나 놀이목적으로 설치되어 놀이에 직접 활용되는 시설 (유사 놀이기구) → 신고·등록(입력) ○, 안전성평가 ○
- ③ 놀이목적으로 설치되지 않았으나 놀이공간내에 있으며 부가적 용도로 놀이에 활용되는 설치물·구조물 → 신고·등록(입력) x, 안전성평가 ○

- 유사 놀이기구 판단절차 및 기준



< 참고. 신고등록시 입력 대상 예시 >

■ 상세정보 입력 대상

- 어린이용 물놀이 욕조 또는 구동되는 물놀이체험 기구 등
- 내부 벽체 및 천정 등에 고정되거나 수작업으로 설치되는 놀이용 구조물(공산품이 아닌 현장에서 시공·설치되는 형태)

		
		
검사대상이 아닌 놀이용 기구·설비	내부 공간구조에 맞게 설치되는 非공산품	물놀이용 욕조·풀

■ 상세정보 입력 대상이 아닌 것

- 물놀이 욕조가 아닌 수영(강습)용 어린이풀장
- 놀이 목적이 아닌 인테리어 구조물(쉼터 등의 기타 부대시설, 실내 장식물)
- 이동식이나 낮은 높이 등 사고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놀이요소

		
가정용 미고정 놀이기구 (영구적 설치·고정 x)	이동식 놀이용품	수영강습용 풀 (놀이활동이 주된 목적 x)
		
보호장비 착용이 필요	보호장비 착용이 필요한 체험시설	전기·외부동력이 필요 (신체힘 활용 자발적 놀이가능 없음)

**< 참고. 유사 놀이기구의 분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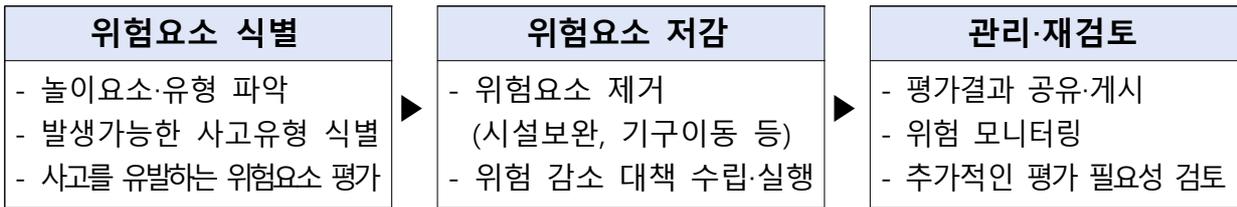
■ 유사 놀이기구 입력시 분류는 놀이의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입력

분류	내용	예시	
① 오르는놀이형	어린이가 양손을 활용하여 오르내리는 신체운동놀이가 가능한 구조물		
② 건너는놀이형	어린이가 손으로 몸을 지탱하며 건널수 있는 놀이구조물		
③ 그네놀이형	벽 또는 천정에 매달려 탈 수 있는 그네형 설비 및 구조물		
④ 미끄럼놀이형	어린이가 신체를 이용해 미끄러지는 놀이가 가능한 구조물		
⑤ 흔들놀이형	어린이가 몸을 기대거나 움직여서 흔들리는 놀이가 가능한 설비 및 구조물		
⑥ 물놀이형	어린이가 신체를 담그거나 구동되는 물놀이 체험 가능한 설비 및 구조물		
⑦ 기타놀이형	어린이가 정적으로 신체를 움직여 놀수 있는 설비 또는 구조물 등 (독립형 볼풀장, 놀이집 등)		
⑧ 조합형	① ~ ⑦ 번이 2가지 이상 조합된 형태의 구조물		

## □ 평가의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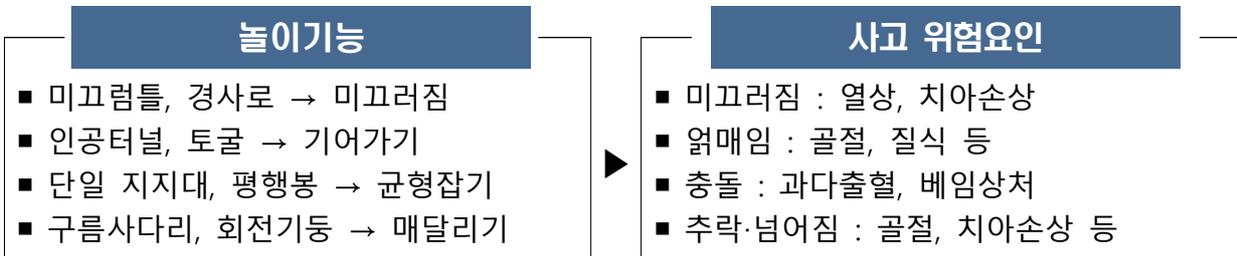
- 놀이공간 설치후 이용개시 전 최초로 실시한 후 위험요소 제거
- 이용개시 후에는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
  - 공간·구조 등 놀이환경에 변화가 있는 경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평가 실시

## □ 평가의 절차·방법



### ① 위험요소 식별

- 어린이놀이 활동공간 내 설치물·공간별로 놀이기능과 그에 따른 사고위험요인(익사, 감전, 추락, 충돌, 미끄러짐, 엽매임, 찢림·긁힘 등)을 파악



- 이때 사고위험이란 단순 타박상·찰과상 등 경미한 부상이 아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사고위험을 의미
- 경미한 위험의 경우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높은 확률로 반복되거나 그 위험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각한 위험으로 관리 필요

-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는 어린이가 심각하고 불필요한 위험(risk)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험요소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유럽 표준(EN1176-1) 등에서는 어린이들이 허용가능한 수준의(치명적이지 않은) 위험을 경험하는 것이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음

부상의 수준	기준 (예시)	관리어부
경미함	계속해서 놀이활동이 가능함	사고빈도에 따라 관리어부 판단
	- 심각성이 미미하거나 부상이 없음	
응급처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음	
	- 멍, 찰과상, 타박상 등	
통원치료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관리 필요
	- 화상, 출혈, 골절(피부 손상없이 2개이하 선상 골절), 열상, (가벼운)치아손상, 뺨 등	
병원치료	일상생활이 힘든 중대 장애 등	
	- 2도 이상의 화상, 과다출혈, 골절(3개 이상의 선상골절), 중증의 열상 및 신경근육 손상 등	
사망 등	- 뇌진탕, 익사, 심정지 등	

- 시설물(기구)의 정상적인 사용뿐만 아니라 오용(이용요령, 사용연령, 사용인원 미준수 등)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도 고려 필요
- 예상 사고유형에 대해 아래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위험요소 식별

사고유형	평가항목(Check list)
익수	1. 시설물의 사용연령 및 인원과 함께 안전한 이용수칙의 표시 및 안내 여부
	2. 시설물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 안내 여부
	3. 익수 위험 방지를 위한 시설물 관리(수심 표시, 감시 사각지대, 마개) 여부
추락	4. 어린이가 오르거나 매달리는 것을 유도하거나 놀이중 추락 위험 여부
	5. 시설물의 사용 연령 및 인원과 함께 영유아 사용 위험에 대한 안내 여부
	6.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난간, 울타리, 안전공간 등)의 충분성 여부
감전	7. 전기, 조명 및 기타 관리용 설비(오븐 등)의 어린이 접근으로 인한 위험 여부
충돌	8. 미끄러짐, 회전 등 강제적 움직임이 발생하는 공간내 장애물 여부
	9. 날카로운 모서리, 이용자간 동선 겹침 등으로 인한 충돌 위험 여부
	10. 조명이 어둡거나 놀이 행위가 모니터링 될 수 없는 사각공간 존재 여부

미끄러짐·넘어짐	11. 시설물의 접근수단(계단, 경사로)에 습기, 물기, 미고정 물체 존재 여부
	12. 이용 동선 상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운 표면(특히 비상구) 여부
엎매임·짓눌림	13. 어린이가 추락할 수 있는 높이에서 머리 등의 신체 끼임사고 위험 여부
	14. 어린이 눈높이에 있는 틈새로 인한 손가락끼임 위험 여부
	15. 움직이는 시설·부품으로 인한 신체의 짓눌림 위험 여부
찢림·긁힘	16. 실내 낮은 천정/ 시설물의 마감상태가 날카로움으로 인한 부상 위험 여부
비상탈출	17. 폐쇄형 공간의 부적절한 출입구 배치와 크기로 인한 위험 여부
	18. 비상통로 및 비상출입구 확보 여부

## ② 위험요소 저감

○ 식별된 위험요소에 대한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조치를 강구

- (기술적 조치) 위험 원인의 특징을 변경, 대체, 또는 제거하여 위험 수준을 낮출 수 있는 물리적·기술적 조치를 강구

- 수심이 깊어 익수 위험이 있는 목욕조는 수심을 낮춤
- 추락 위험이 있는 시설은 추락방지 난간을 설치하거나 충격완화 바닥재를 설치
- 감전 위험이 있는 시설은 어린이가 손댈 수 없도록 이중 보호장치 등을 설치
- 놀이활동공간내 놀이용도가 아닌 충돌 위험이 있는 집기·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물을 다른 위치로 이동

- (관리적 조치) 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나 기구이용시 행동요령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안내

- 시설물(기구)에 대한 안전수칙, 이용연령, 사용인원 등을 표시
- 익수 위험이 있는 목욕조는 수심 및 안전수칙을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 안내
-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시설에서는 보호자가 아이를 잘 관찰할 수 있도록 안내
- 기구가 파손되어 있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관리주체에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

※ 관리자는 기술적 조치와 관리적 조치를 적절히 병행하여야 함

### ③ 평가결과 관리 및 재검토

- 관리주체는 안전성평가 결과를 놀이공간에 게시하여 이용자와 보호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에 평가결과를 등록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이후 별도 안내 예정('25년)
-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놀이시설의 구조 및 이용환경 변화가 발생한 경우 즉시 추가로 안전성평가 실시
- 위험요소가 발견된 경우 위험요소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안전성평가를 반복하여 실시

\* 심각한 위험이 아닌 경미한(허용가능한) 수준의 위험

#### < 참고. 안전성평가 방법·절차 예시 >

##### ■ 시설현황

- (상 호 명) 00 키즈카페
- (등록형태)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
- (유사 놀이기구)
  - : 물놀이형 1식, 기타놀이형(놀이집형) 1식, 조합형(미끄럼틀형, 기타(볼풀)) 1식

		
물놀이형	기타놀이형(놀이집형)	조합형(미끄럼틀형+볼풀)

※ 세 가지 놀이기구 모두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유기기구 등에 해당하지 않으나 어린이 놀이 활동에 활용되어 안전관리가 필요한 안전성평가 대상 시설에 해당

■ 평가절차

절 차	물놀이형	기타(놀이집형)	조합형	
위험식별	놀이요소	▶ 물놀이	▶ 기어오르기 ▶ 미끄럼 타기 ▶ 볼풀 안에서 놀기	
	발생 가능한 사고유형	▶ 익사 ▶ 미끄러짐 ▶ 추락	▶ 추락 ▶ 넘어짐 ▶ 충돌	
	위험요소	▶ 익사 - 수심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음 - 물놀이 안전수칙이 안내 되어 있지 않음 ▶ 미끄러짐 - 욕조 출입구 쪽 계단이 미끄러움 ▶ 추락 - 어린이가 욕조 모서리 부분을 밟고 올라서서 추락할 위험이 있음	▶ 추락 - 2층 울타리 높이가 낮음 - 울타리 개구부 간격이 넓어 아이들이 추락할 수 있음 ▶ 충돌 - 경사로 하단에 장애물이 적치되어 있음 ▶ 찢림 - 1층 입구 쪽 마감이 매끄럽지 못하여 찢릴 위험이 있음	▶ 추락 - 해당 없음 ▶ 넘어짐 - 미끄럼틀 표면에 단차가 발생하여 이용자가 넘어 질 우려가 있음 ▶ 충돌 -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이용할 경우 충돌 위험이 있어 보임
위험저감	위험요소 저감	▶ 익사 - 수심 및 안전수칙 게재 ▶ 미끄러짐 - 욕조 출입구 쪽 계단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 부착 ▶ 추락 - 욕조 모서리 부위에 추락 위험 안내 표시	▶ 추락 - 단기적으로 수리가 어려워 우선 이용금지 표시 및 안내 ▶ 충돌 - 장애물 제거 ▶ 찢림 - 1층 입구 쪽 완충재 처리	▶ 추락 - 해당 없음 ▶ 넘어짐 - 이용금지 및 다른 기구 이용을 안내하고 외부 업체에 수리를 의뢰 ▶ 충돌 - 적정 이용인원 표시
	위험 감소대책 수립	해당 없음	▶ 추락 - 2층 울타리 높이를 높이고 개구부 간격을 좁힘	▶ 넘어짐 - 미끄럼틀 부분 단차 해소 ▶ 충돌 - 동시 이용가능한 적정 인원(4인) 표기·안내
관리 재검토	결과공유	시스템 등록 및 게시		
	모니터링	고객 의견 등 지속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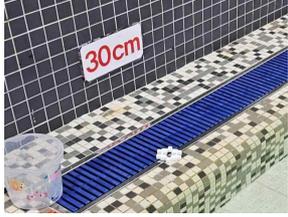
# 붙임 1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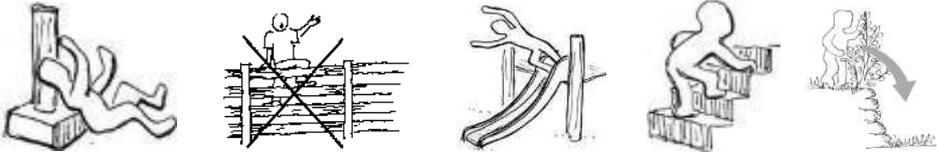
※ 안전기준은 사업자가 신종·유사 놀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시 참고할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제시하는 안전기준임

### □ 익수

<b>목적</b>	어린이가 접근가능한 풀장 및 물놀이 시설에 물에 빠지거나 잠기는 위험이 없어야 함	
<b>안전 기준</b>	1) 풀장의 사용 연령(또는 키) 및 인원이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표시되어 있어야 함 2) 시설물별 안전한 이용수칙이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표시되어야 함 3) 영유아(만3세 이하)가 풀장 이용시 보호자 최소 1인이 동반입수하거나 관찰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여야 함 4) 풀장 이용시 위험에 대한 안내를 실시해야 함 5) 풀장 등은 수심이 표시되고 영유아 보호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함 6) 풀장 시설 내 배수구 등에 목이나 손가락·발가락 등 신체가 얽매이거나 끼일 위험이 없어야 함	
<b>평가 방법 (예시)</b>	1) 시설물의 사용 연령 및 인원과 함께 안전한 이용수칙의 표시 및 안내 여부	▶ 사용 연령과 인원, 이용시 사고위험 및 안전수칙을 픽토그램 등 활용하여 눈에 띄는 곳에 표기 ▶ 안내표지의 시인성 및 위치의 적정성 등 확인 ▶ 시설 이용전 예약문자, 동의서 작성 등을 통해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 사전안내   
	2) 시설물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 안내 여부	▶ 여과기 입수구 등 풀 이용중 아이 손·발이 끼일 수 있는 개구부에 대해 덮개(그물망) 설치 및 주의사항 안내 표기 ▶ 시설 이용전 예약문자, 이용동의서 등을 통해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 사전안내   

<p>3) 익수 위험 방지를 위한 시설물 관리 여부(수심표시, 감시사각지대, 마개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가 물을 공급하는 운영형태로 변동되는 수심을 표시하는 장치(수심계) 부착</li> <li>▶ 배수구 및 마개 부위에 손·발 등 신체가 끼일 위험이 있는지 확인</li> <li>▶ 감시사각지대가 없도록 성인 감시하에 풀장 이용토록 안내, 성인용 좌석 비치, CCTV 설치 및 모니터링 공간 마련</li> </u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	--

□ 추락

<p><b>목적</b></p>	<p>어린이는 일정한 높이에서 뛰어내릴 때 다치지 않아야 하며, 계단, 난간, 울타리 등의 추락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함</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b>안전 기준</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바닥에서 60cm 이상 오를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 추락방지(난간) 또는 보호 장치(충격흡수 매트 등)가 있어야 함</li> <li>2) 45° 이상의 경사로 오르는 형태의 시설물에는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li> <li>3) 울타리 등의 보호장치에 어린이가 올라 설 수 있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li> <li>4) 만3세 이하 영유아 이용시 보호자 동반 및 보호 의무를 안내하도록 하여야 함</li> <li>5) 만3세 이하가 사용하기에 위험한 시설은 연령제한 표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li> <li>6) 만3세 미만 이용자가 60cm 이상 오를 수 있는 데크에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함</li> <li>7) 바닥에서 60cm 이상 오르는 시설 또는 어린이가 매달리거나 탈수 있는 기구 주변으로 1m 이상의 안전한 공간이 있도록 하여야 함</li> <li>8) 추락 위험이 있는 구역의 바닥은 충격흡수처리를 하여야 함</li> </ol>
<p><b>평가 방법 (예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단 및 경사로에서의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 시공 및 추락 가능 지점의 충격완화 조치(매트, 쿠션 등)</li> <li>▶ 풀장 출입구 주변 충분한 공간 확보로 물이 없을 경우의 추락사고 방지</li> </ul> <div style="text-align: right;">  </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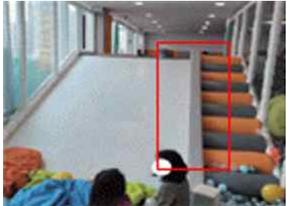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락·낙상 위험이 있는 공간에 충격흡수 표면처리(바닥, 벽 모서리 등)</li> <li>▶ 인테리어용 부대시설의 고정상태 확인(전도 및 매달림에 의한 추락사고 등 방지)</li> <li>▶ 풀장의 벽체 또는 울타리 상단에 장식소품을 두어 앉거나 두발로 서지 않도록 유도</li> </ul> 
2) 시설물의 사용 연령 및 인원과 함께 영유아 사용 위험에 대한 안내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단, 그네 등 추락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에 영유아가 오르거나 접근함으로써 인한 사고가 없도록 영유아 사고 위험 별도 안내</li> <li>▶ 영유아 단독으로 출입하지 않도록 풀장 출입문 시공</li> <li>▶ 영유아가 사용하기에 위험한 시설은 연령 또는 키 제한 표시를 부착</li> </ul>  
3)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난간, 울타리, 안전공간 등)의 충분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가 접근가능한 모든 계단 및 경사로에 추락을 방지하는 난간 등을 설치</li> <li>▶ 풀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추락하는 위험 없이 어린이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난간 (높이 60~85cm) 설치</li> <li>▶ 어린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높이 60cm 이상의 플랫폼에는 울타리 등의 추락 방지 및 충격흡수표면처리</li> </ul>  

## □ 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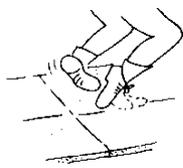
목적	어린이가 접근가능한 모든 공간에 전기설비·도구로 인한 감전 위험요소가 없도록 함	
안전 기준	1) 모든 조명장치 및 전기설비는 어린이가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2) 풀장 주변의 전기설비·도구 및 콘센트는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어린이가 쉽게 접근할 수 없어야 함	
평가 방법 (예시)	1) 전기, 조명 및 기타 관리용 설비 (오븐 등)의 어린이 접근으로 인한 위험 여부	▶ 전기설비 등으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놀이 동선상에 전기배선 및 콘센트, 집기, 청소도구가 없도록 배치 * 공기청정기, 가열도구, 정수기(온수), 청소도구 등 이동조치   ▶ 시설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 접근 위험 방지 처리(콘센트 커버, 전기배선의 인입처리, 전기시설 열림 방지도구 설치 등) ▶ 물기가 있는 장소(풀장, 세면대)에 콘센트 커버 사용  

## □ 충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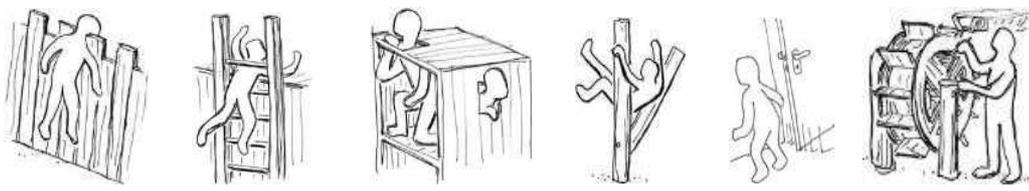
목적	놀이에 집중하는 어린이가 인식할 수 없는 장애물로 인한 충돌사고가 없도록 함 	
안전 기준	1) 매달리거나 움직이는 시설 주변으로 부딪칠 수 있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함 2) 강제적이거나 연속적인 움직임이 있는 놀이요소에 신체부위(팔, 다리)가 충돌할 수 있는 돌출된 구조물이나 부속품이 없도록 하여야 함 3) 미끄러지는 시설의 도착지점에는 부딪칠 수 있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함 4) 기구별 출입과 움직임 등 활동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여야 함	

	<p>5) 다른 형태나 방향의 움직임이 충돌하거나, 급격한 방향전환을 유도하는 놀이동선의 배치가 없도록 하여야 함</p> <p>6) 활동공간내 어린이가 인지할 수 없는 갑작스런 높이나 속도의 변화, 요철, 돌기가 없도록 하여야 함</p> <p>7) 어린이 놀이활동이 모니터링되지 않는 사각공간이 없도록 하여야 함(CCTV, 모니터 등)</p> <p>8) 어린이가 보이지 않는 놀이공간은 성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p> <p>9) 어린이의 동선상에 존재하는 집기자재는 고정되어야 함</p>
<p><b>평가 방법 (예시)</b></p>	<p>1) 미끄러짐, 회전 등 강제적 움직임이 발생하는 놀이공간내 장애물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네·해먹과 유사하게 매달린 직물구조물, 미끄럼틀처럼 기능하는 경사로 등은 강제적 움직임이 발생하므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및 주변 충격흡수표면처리</li> <li>▶ 경사로 하단 도착지점 주변 충돌위험이 있는 적치물이나 장애물의 이동조치</li> </u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2) 날카로운 모서리, 이용자간 동선 겹침 등으로 인한 충돌 위험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놀이동선상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로 인한 사고위험이 없도록 충격보호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격방지쿠션, 보호캡 등 설치</li> </ul> </li> <li>▶ 경사로와 계단 사이 난간이나 칸막이가 없어 이용자간 놀이동선이 겹쳐 충돌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간·칸막이 설치, 완충공간 설정 등</li> </ul> </li> </u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3) 조명이 어둡거나 놀이행위가 모니터링 될 수 없는 사각공간 존재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수영장은 성인공간과 분리되어 감시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CCTV, 반사경, 보호자용 좌석 등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li> <li>▶ 조명이 설치되지 않은 어두운 공간의 경우 시인성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내부 장애물, 날카로운 모서리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없는지 점검</li> </u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 □ 미끄러짐 및 넘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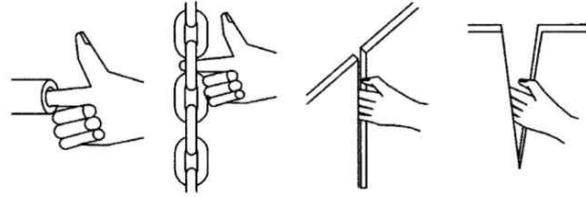
<p><b>목적</b></p>	<p>동선 상에 존재하는 턱과 장애물로 인한 넘어짐, 미끄러짐 위험이 없어야 함</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p><b>안전 기준</b></p>	<p>1) 계단, 경사로 등 접근 수단에 미끄러질 수 있는 요인이 없도록 하여야 함                  2) 활동공간 내에 바닥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단차 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함</p>	
<p><b>평가 방법 (예시)</b></p>	<p>1) 시설물의 접근수단(계단, 경사로)에 습기, 물기, 미고정 물체 존재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풀장 진입부에 물기가 있을 경우 미끄러울수 있으므로 난간 및 미끄럼 방지매트 시공</li> <li>▶ 놀이동선상에 파라솔과 같이 고정되지 않은 인테리어 설비는 고정 또는 휴게공간으로 이동 조치</li> </u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2) 이용 동선 상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운 표면(특히 비상구) 여부</p>	<p>2) 이용 동선 상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운 표면(특히 비상구)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풀장 진입부(계단, 주변통로 등) 및 샤워장 주변 미끄럼 방지매트/패드 시공</li> <li>▶ 터널 경사도로 인해 바닥과의 충돌위험이 있으므로 터널 내부 미끄럼 방지, 또는 바닥 충격완화매트 시공</li> <li>▶ 비상문 출입구로 연결된 계단 및 경사로의 긴급사용 시를 대비 이용자 미끄러짐 방지 처리</li> <li>▶ 활동공간 내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단차 또는 장애물 여부</li> </u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 □ 엮매임·짓눌림

<p><b>목적</b></p>	<p>놀이에 집중하는 동안 신체가 끼이거나 엮매임이 발생되지 않아야 함 움직이는 부품 또는 틈새로 인해 손가락 등의 짓눌리는 사고가 없어야 함</p> 
<p><b>안전 기준</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60cm 이상 어린이가 오를수 있는 높이에 머리가 걸릴 수 있는 단단한 틈새 또는 개구부가 없도록 하여야 함(시설안전기준 : 89×157mm 이하)</li> <li>2) 어린이의 신체(직경 50cm 이하의 터널·통로 등) 또는 울타리 등에 목이 엮매일 수 있는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함</li> <li>3) 손이나 팔이 끼일 수 있는 V자형 틈새(60° 각도 미만)가 없도록 하여야 함</li> <li>4) 발이 빠지거나 손가락이 끼일 수 있는 틈새는 직경 8~25mm임</li> <li>5) 움직이는 놀이요소에 12mm 이하로 짓눌릴 수 있는 틈이 없어야 함</li> <li>6) 여닫이 문 또는 경첩부에 12mm 이하 간격의 짓눌릴 수 있는 틈이 없어야 함</li> </ol>
<p><b>평가 방법 (예시)</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어린이가 추락할 수 있는 높이에서 머리 등의 신체 끼임 사고 위험 여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자형 틈새에 목이나 팔다리가 끼일 위험이 있으므로 삼각패드 등 끼임방지 처리</li> <li>▶ 풀장 배수구에 발가락 끼임사고가 우려되는 틈새에 끼임 방지 조치</li> </ul> </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위치에 설치된 울타리나 그물망에 머리카나 신체가 끼일 수 있는 틈새 간격 조정 조치</li> </ol> 

2) 어린이 눈높이에 있는 틈새로 인한 손가락끼임 위험 여부

▶ 손가락 얽매임이 발생할 수 있는 틈새 및 파이프는 막음 조치 및 움직이는 체인 등은 보호커버 설치



▶ 매달리는 형태의 직물구조물에 손가락이 끼일 수 있으므로 직물사이 개구부에 가죽커버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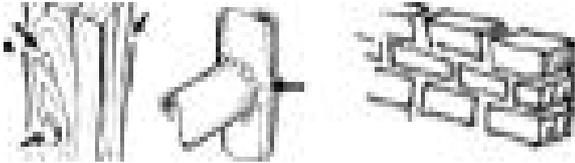
3) 움직이는 시설·부품으로 인한 짓눌림 위험 여부

▶ 건너는 목재발판의 짓눌림 방지를 위해 목재발판끼리 좁아지지 않도록 목재발판을 고정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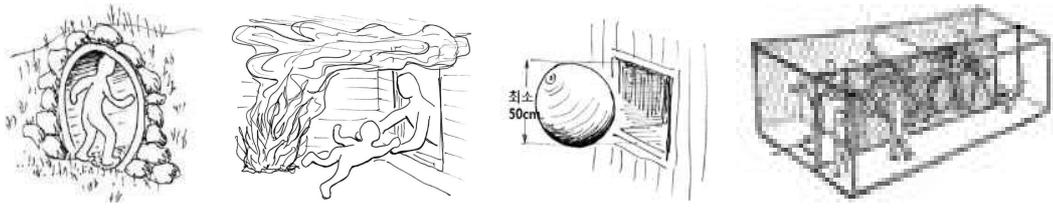


▶ 출입문 등에 손가락, 발가락 짓눌림 방지를 위한 쿠션부착 등을 통해 발가락 접근 방지 처리

## □ 찢림·긁힘

<p><b>목적</b></p>	<p>어린이가 접촉할수 있는 표면에 단단하고 날카로운 모서리 등이 없어야 함</p> 
<p><b>안전 기준</b></p>	<p>1) 시설물의 표면이 갈라지거나 거친 표면이 없어야 함                  2) 시설물의 모서리는 둥글게 라운딩 처리되어야 함                  3) 구조물의 낮은 천정으로 인한 찢림 및 배임 위험이 없어야 함</p>
<p><b>평가 방법 (예시)</b></p>	<p>1) 실내의 낮은 천정, 또는 시설물의 마감상태가 날카로움으로 인한 부상위험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풀장 내 (타일)계단 모서리에 충돌 방지를 위한 보호쿠션 또는 난간 등을 추가 설치하여 모서리 제거 처리</li> <li>▶ 실내 낮은 천정으로 인한 배관 및 조명 등에 머리충돌 등 위험 방지를 위해 보호쿠션 및 주의안내 표시 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단 모서리 등은 미끄럼방지, 보호쿠션, 시인성강화 등으로 충돌로 인한 사고위험 최소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가 접근가능한 공간내 모든 날카로운 모서리 제거 또는 찢림 방지 조치</li> </ul> 

## □ 비상탈출

<p><b>목적</b></p>	<p>내부구조를 갖춘 시설물은 비상시 성인의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사각공간이 없어야 함</p> 	
<p><b>안전 기준</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내부길이가 2m 이상인 통로는 다른 면에 위치한 출입구가 2개 이상일 것</li> <li>2) 통로의 출입구는 비상시 성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직경 50cm 이상일 것</li> <li>3) 비상시 대응조치(피난 안내도 등)가 적절히 안내되고 표시되어야 함</li> <li>4) 계단, 복도 등 비상대피로 등에는 피난에 장애가 되는 적체물이 없어야 함</li> </ol>	
<p><b>평가 방법 (예시)</b></p>	<p>1) 폐쇄형 공간의 출입구 배치와 크기로 인한 사고위험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쇄형 구조로 된 좁은 통로가 작아 비상시 탈출을 성인이 도울 수 없으므로 별도의 탈출로 확보</li> <li>▶ 비상시 탈출을 돕기위해 통로를 추가 개설하여 모든 통로상에 양쪽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최소 2개의 통로 확보</li> </ul> 
	<p>2) 비상통로 및 비상출입구 확보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출입구로 향하는 통로는 비상시 원활한 탈출을 저해하는 통로상에 배치된 놀이용 집기자재 재배치</li> <li>▶ 비상출입구나 피난기구(완강기) 주변 원활한 탈출을 저해하는 적체된 각종 장애물 제거</li> </ul>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평가 결과				
관 리 자 (관리 주체)	상 호(명 칭)		등 록 형 태	
	성 명(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대 상 기 구	기 구 설 명			
	놀 이 활 동			
	설 치 일			
	비 고			
안 전 성 평 가 결 과	실 시 일 자		평 가 자	(인)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및 조치결과	익수	1. 시설물의 사용연령 및 인원과 함께 안전한 이용수칙의 표시 및 안내 여부	
			2. 시설물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 안내 여부	
			3. 익수 위험 방지를 위한 시설물 관리(수심 표시, 감시 사각지대, 마개) 여부	
		추락	4. 어린이가 오르거나 매달리는 것을 유도하거나 놀이중 추락 위험 여부	
			5. 시설물의 사용 연령 및 인원과 함께 영유아 사용 위험에 대한 안내 여부	
			6.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난간, 울타리, 안전공간 등)의 충분성 여부	
		감전	7. 전기, 조명 및 기타 관리용 설비(오븐 등)의 어린이 접근으로 인한 위험 여부	
		충돌	8. 그네/미끄럼틀/회전 등 강제적 움직임이 발생하는 공간내 장애물 여부	
			9. 동선이 겹치거나 잘못된 배치로 인한 충돌 위험 여부	

			10. 조명이 어둡거나 놀이 행위가 모니터링 될 수 없는 사각공간 존재 여부	
		미끄러짐	11. 시설물의 접근수단(계단, 경사로)에 습기, 물기, 미고정 물체 존재 여부	
			12. 이용 동선 상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운 표면(특히 비상구) 여부	
		엎매임· 짓눌림	13. 어린이가 추락할 수 있는 높이에서 머리 등의 신체 끼임 사고 위험 여부	
			14. 어린이 눈높이에 있는 틈새로 인한 손가락끼임 위험여부	
		찢림·긁힘	15. 움직이는 놀이요소(밧줄 등)에 부품 간 간섭으로 인한 찢눌림 위험 여부	
			16. 실내 낮은 천정/ 시설물의 마감상태가 날카로움으로 인한 부상 위험 여부	
		비상탈출	17. 폐쇄형 공간의 출입구 배치와 크기로 인한 위험 여부	
			18. 비상통로 및 비상출입구 확보 여부	
		비	고	

### 붙임 3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작성 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평가 결과					
관 리 자 (관리 주체)	상 호(명 칭)	00무인키즈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명)		등 록 형 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
	성 명(대 표 자)	0 0 0		전 화 번 호	000 - 000 - 0000
	주 소	(사업자등록증 기준 주소 기재)			
대 상 기 구	기 구 설 명	어린이가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직사각형 형태의 수영조 (기구의 형태, 쓰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제시)			
	놀 이 활 동	수영, 다이빙을 제외한 물놀이 (기구를 활용하여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 기재)			
	설 치 일	0000년 00월 00일			
	비 고	특이사항 기재			
안전성평가 결 과	실 시 일 자	0000년 00월 00일		평 가 자	0 0 0 (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안전관리자)이 평가)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및 조치결과	익수	1. 시설물의 사용연령 및 인원과 함께 안전한 이용수칙의 표시 및 안내 여부 이용수칙 표시 미흡 → 이용수칙 게시(00월00일)		
			2. 시설물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 안내 여부 해당 없음		
			3. 익수 위험 방지를 위한 시설물 관리(수심 표시, 감시 사각지대, 마개) 여부 다이닝룸에서 목조 사각지대 존재 → CCTV 설치(00월00일)		
		추락	4. 어린이가 오르거나 매달리는 것을 유도하거나 놀이중 추락 위험 여부 수영조에서 다이빙 우려 → 금지 표시판 부착 및 이용객 대상 문자 안내(00월00일)		
			5. 시설물의 사용 연령 및 인원과 함께 영유아 사용 위험에 대한 안내 여부 해당 없음		
			6.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난간, 울타리, 안전공간 등)의 충분성 여부 해당 없음		
	감전	7. 전기, 조명 및 기타 관리용 설비(오븐 등)의 어린이 접근으로 인한 위험 여부			

			해당 없음
	충돌	8. 그네/미끄럼틀/회전 등 강제적 움직임이 발생하는 공간내 장애물 여부	해당 없음
		9. 동선이 겹치거나 잘못된 배치로 인한 충돌 위험 여부	해당 없음
		10. 조명이 어둡거나 놀이 행위가 모니터링 될 수 없는 사각공간 존재 여부	해당 없음
		11. 시설물의 접근수단(계단, 경사로)에 습기, 물기, 미고정 물체 존재 여부	수영조 출입구 계단에 미끄럼방지 조치 미흡 → 미끄럼방지 테이프 부착(00월00일)
		12. 이용 동선 상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운 표면(특히 비상구) 여부	해당 없음
		13. 모든 시설물 등에 신체가 끼일 수 있는 위험 여부	배수구에 이중망 조치 미흡 → 이중망 설치 완료(00월00일)
	엮매임· 짓눌림	14. 어린이가 접근가능한 시설물에서의 손, 팔 등의 끼임 위험 여부	해당 없음
		15. 움직이는 놀이요소(밧줄 등)에 부품 간 간섭으로 인한 짓눌림 위험 여부	해당 없음
		16. 실내 낮은 천정/ 시설물의 마감상태가 날카로움으로 인한 부상 위험 여부	해당 없음
	비상탈출	17. 폐쇄형 공간의 출입구 배치와 크기로 인한 위험 여부	해당 없음
		18. 비상통로 및 비상출입구 확보 여부 및 장애물 적체 여부	해당 없음
	비 고		해당 없음

※ 필요한 경우, 시설 전경이나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시설 전경

(시설 전경 사진)	(시설 전경 사진)
시설 전경1	시설 전경2

○ 이용수칙 표기(위험요인 식별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진 증빙)

(위험요소 식별 사진)	(조치 이후 사진)
위험요소	조치사항

○ CCTV 설치

(위험요소 식별 사진)	(조치 이후 사진)
위험요소	조치사항

○ 다이빙 금지 안내

(위험요소 식별 사진)	(조치 이후 사진)
위험요소	조치사항

○ 계단 미끄럼 방지

(위험요소 식별 사진)	(조치 이후 사진)
위험요소	조치사항

○ 배수구 이중망 설치

(위험요소 식별 사진)	(조치 이후 사진)
위험요소	조치사항

**① 관리주체의 안전성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 ◇ 안전한 놀이환경을 위해서는 시설 그 자체의 안전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환경적·관리적 요인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전반적인 위험요소에 대해 상시적인 관리노력이 필요합니다.
- ◇ 현행 놀이시설에 적용되는 안전검사·점검 등의 경우 시설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표준화된 형태로 제조·설치되는 놀이기구를 그 대상으로 하여 최근 늘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신종 놀이시설에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 ◇ 따라서 신종 놀이시설·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 상시적으로 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성평가가 필요합니다.

**② 안전성평가는 현재의 놀이시설 안전관리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 안전검사의 경우 지정된 전문기관이 2년이라는 법적 주기에 따라 실시되며 정량적 기준에 의한 시설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 ◇ 안전성평가의 경우 관리자가 주체가 되어 놀이활동 공간내에서 발생가능한 사고 위험요소를 정성적 기준에 의해 수시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활동입니다.
- ※ (현행) 정량적, 시설적 위험요소 중심 ↔ (신종) 정성적, 포괄적 위험요소 평가  
 ↳ 표준화된 야외 놀이터 등에 적용      ↳ 형태가 다양한 신종 놀이공간에 적용

**③ 안전성평가는 관리주체가 해야 하나요?**

- ◇ 안전성평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놀이시설을 가장 잘 알고 상시 관리할 책임이 있는 관리주체가 수행하되, 설치형태가 복잡하거나 대규모로 설치되는 등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분야 전문기관에 자문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④ 관리주체의 판단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 않나요?

- ◇ 안전성평가란 전문성에 기반한 시설중심의 안전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신종 놀이공간에 대해 **관리주체의 최소한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자 타분야 사례\*를 참고하여 도입한 안전관리방안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분야(사업주의 위험성평가)

- ◇ 관리주체가 정성적 평가항목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의 특성상 관리주체의 경험과 역량에 따라 평가의 질적 수준이 달라질수 있으나,
- ◇ **구체화된 평가 지침**과 관리·감독기관의 **지도·감독** 등을 통해 평가의 질적 수준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⑤ 안전검사에 비해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은 아닌가요?

- ◇ 안전관리의 방향이 달라서 직접 비교가 어렵습니다.
- ◇ **안전검사**의 경우 **지정된 전문기관**이 수행함으로써 신뢰성있는 안전관리체 계로 기능하는 장점은 있으나, 2년이라는 **법적 주기**에 따라 실시되며 **시설적 안전확보**에 국한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 이에 반해, **안전성평가**의 경우 **관리주체의 역량**에 따라 평가결과가 좌우 된다는 한계가 있으나, 보다 **포괄적인 위험요인**에 대해 **수시로 평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⑥ 안전성평가에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나요?

- ◇ 표준화된 형태로 설치되지 않는 신종 놀이공간은 공간 구조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서 어린이들의 **놀이형태**와 **이용중 위험요소**를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관리주체인 사업주**입니다.
- ◇ 안전성평가에 별도의 도구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지 않으나, 관리주체의 주관적인 판단에 지나치게 좌우되지 않도록 **사례 및 자료를 개발**할 예정이며,
- ◇ 공간내 사고위험요소를 손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 사례를 풍부하게 수록한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

## 참고 2

## 어린이 연령 및 신장에 따른 인지·행동 특성

☞ 어린이의 행동특성을 소개하는 일반적인 지침<sup>1)</sup>을 참고하여 이용자인 어린이의 연령과 키 등을 고려한 지도·감독 필요

범주	발달 및 행동 특성
만 2~4세 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세: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li><li>• 3세: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li><li>• 4세: 위험한 행동과 상황이 무엇인지 평가할 수 없고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li></ul>
만 4~6세 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5세: 약간의 매우 분명한 위험 상황의 이해</li><li>• 6세: 위험한 상황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인지 능력 보유하고 있고 위험, 어려움 등을 구별할 수 있음</li></ul>
만 6~8세 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8세: '지금 그리고 여기'라는 논리를 사용하여 생각 수 있으며, 위험과 위험한 행동, 어려움을 구별할 수 있고 규칙을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음</li></ul>
만 8~10세 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0세: 자신과 타인에 대한 위험, 준수해야 할 규칙, 특정 상황에서 가져야 할 올바른 행동과 잘못된 행동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음</li></ul>
만 10~14세 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자신의 행동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져야하고, 신호와 서면 지침을 이해할 수 있음</li></ul>

1) 출처 : EN 13814-1:2019

### 참고 3

### 어린이 연령별 놀이행동 특성

☞ 연령별 신체발달의 특징 및 행동특성<sup>2)</sup>을 참고하여 놀이요소별 적정연령의 어린이가 이용하도록 하고 사고 위험을 최소화

범주	발달 및 행동 특성
만 1세 ~ 만 2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걷기가 안정적이 되어 다양한 이동이 가능하나 계단 오르기 등이 더 안정적으로 발달되는 시기</li> <li>- 걷기가 자유로워지고 발끝으로 걷거나 하는 등 다양한 이동성이 있음</li> <li>- 달리려고는 하지만 빨리 달리지 못함</li> <li>- 위 아래로 낮게 점프하지만 종종 넘어짐</li> <li>- 앉아서 몸통을 틀며 이리저리 움직임 배를 깔거나 누워서 그네를 탈 수 있음</li> <li>- 큰 물건을 밀고 당길 수 있음. 특히 잡아 끌기를 좋아함</li> <li>- 잡고 비틀어 쥐어짜는 것을 즐김</li> <li>- 낮은 계단 등을 기어오르기를 좋아함. 위로 오르더라도 천천히 기어서 오르기를 함</li> </ul>
만 2세 ~ 만 3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르기, 미끄러져 내리기, 기어가기, 던지기, 점프하기를 즐기며 던지기, 구르기, 그네 타기 등이 더 안정적으로 발달되는 시기</li> <li>- 걷다가 의도적으로 멈출 수 있고 빠르고 느리게 등 속도를 조절하며 율동적으로 걸음</li> <li>- 달리기를 좋아하여 계속 멈추지 않고 달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급히 멈추거나 가는 방향을 바꾸는 통제력은 약함</li> <li>- 낮은 높이에서 미끄러지기, 몸을 꼬기, 제자리에서 돌기</li> <li>- 앉아서 몸을 뱀처럼 땅에 붙이고 꿈틀거리며 미끄러지듯이 전진 가능</li> <li>- 두 발을 모은 후 계단 오르기, 움직임을 연결하고 반복할 수 있음</li> <li>- 기어오르기는 좋아하지만 내려오지는 못함</li> <li>- 균형있게 두발로 점프를 할 수 있으며, 천천히 구르는 것이 가능</li> <li>- 한발로 균형을 잡고 서있을 수 있으며, 공을 한 발로 찰 수 있음</li> <li>- 두 팔을 사용해서 공을 던지며 던질 때 발이나 몸을 움직이지 않음</li> <li>- 의자에 앉는 그네를 탈 수 있음</li> </ul>
만 3세 ~ 만 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걷기와 달리기, 미끄러져 내리기, 기어가기, 오르기, 계단 오르기, 균형잡기, 멈추기, 점프하기 등이 매우 안정적이 되고 줄 위를 걷기, 계단 내려오기 등도 더 안정적으로 발달되는 시기</li> <li>- 앉았다가 균형 있게 일어날 수 있음</li> <li>- 놀이할 때 다른 친구를 균형 있게 밀고 당기며 거친 신체 놀이를 할 수 있음</li> <li>- 좁은 직선 평행대 위에서 균형 잡고 걷는 것을 시도하나 안정적이지 않음</li> </ul>

범주	발달 및 행동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곡선으로 연결된 줄 위를 무엇인가를 잡고 점차 걷을 수 있음</li> <li>- 한 발씩 발을 바꾸어가며 계단 오르기를 하며, 내려 올 때는 두발을 모아서 내려옴</li> <li>- 낮은 사다리를 잡고 오르고 내리는 것이 가능함</li> <li>- 두 발로 높이 점프할 수 있고 한 발로 장애물을 넘을 수 있음</li> <li>- 짧거나 길게 스피드를 통제하며 잘 달리고 장애물을 피하려고 가던 길의 방향을 잘 바꿈</li> <li>- 균형 있게 빠르게 구를 수 있으며 낮은 언덕에서 구르는 것도 가능</li> <li>- 급히 멈추는 것도 가능하며, 높은 나선형 미끄럼 타는 것이 가능함</li> <li>- 몸을 앞뒤로 흔들며 한쪽 팔로 공을 던짐</li> </ul>
만 4세 ~ 취학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향 바꾸며 걷기, 줄 위를 균형있게 걷기, 빨리 달리기, 높은 곳에서 미끄러져 내리기, 사다리 등을 잘 오르기 등 대부분의 신체발달이 안정적이 됨</li> <li>- 뒤로 걸거나 옆으로 걷는 것이 가능하며, 한발로 뛰는 것이 가능함</li> <li>- 곡선 위를 균형 있게 걷고 평균대 위를 두려움 없이 잘 걸음</li> <li>- 또래를 잡고 당기는 거친 신체놀이를 게임식으로 하며 즐김</li> <li>- 달리면서 방향을 바꿀 수 있음</li> <li>- 계단, 사다리, 정글짐, 미끄럼, 나무 등을 타고 잘 오름</li> <li>- 연속 점프를 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착지가 안정되고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음</li> <li>- 공차기나 발로 차기를 균형있게 함</li> <li>- 혼자 서서 그네를 탈 수 있음</li> <li>- 높이뛰기와 멀리 뛰기를 할 수 있음</li> </ul>
만 6세 ~ 만 8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 저학년은 대소근육의 기본운동기능이 안정되게 발달하여 유아기보다 빠르고 정교하며 유연함을 지님</li> <li>• 달리기 등의 기본 신체발달은 물론 협응력이 발달하고 규칙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여 줄넘기, 자전거타기, 축구나 수영, 등반, 달리기, 점프 등 대근육 운동과 스포츠를 잘 습득해 나감</li> <li>- 바퀴가 달린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등에서 균형을 잘 잡음</li> <li>- 게임 규칙을 이해하기 때문에 협동하여 스포츠 참여가 가능</li> <li>- 강충뛰기, 멀리뛰기, 높이뛰기를 좋아하여 트램폴린 위에서 뛰는 것을 즐거함</li> <li>- 다양한 공이나 기구를 가지고 하는 운동을 즐거함</li> <li>- 평균대, 철봉, 정글짐, 그물망을 높게 올라가는 것을 좋아함</li> </ul>

2) 공공형주택 실내놀이터 조성방안 연구, LH(2020: 49).

## 참고 4

# 보호자 안전수칙 (▶ 놀이공간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

### □ 무인키즈카페

## 보호자 안전수칙 (무인키즈카페)

관리자가 없는 무인키즈카페에서 안전요원은 보호자입니다.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여 사고없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1 항상 눈을 떼지 않기

- ☑ 실내 키즈카페는 다양한 놀이기구와 함께 보이지 않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보호자가 어린이 행동을 항상 지켜봐야 합니다.
- ☑ 높은 곳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지도해 주세요.

### 2 이용하기 전 위험한 요소가 없는지 점검

- ☑ 어린이가 사용할 놀이기구가 연령과 키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 ☑ 어린이가 떨어거나 베이는 등 부상을 당할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표면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 ☑ 로프, 그물 등이 훼손되어 추락, 끼임 위험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 3 안전규칙 준수 교육

- ☑ 어린이에게 놀이기구별 안전수칙을 안내하여 안전하게이용하도록 합니다.
- ☑ 작은 장난감이나 부품을 입에 넣지 않도록 지도해 주세요.
- ☑ 놀이 도중 다치거나 아플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 4 놀이중 음식-음료 섭취 주의

- ☑ 음식이나 음료를 먹으면서 놀이활동을 하는 경우 질서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음식-음료섭취는 휴식시간을 이용해 주세요.

### 5 응급상황 대비 필요한 사항을 미리 숙지

- ☑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 관리자에게도 연락합니다.
- ☑ 사고 발생 즉시 연락가능한 관리자 연락처와 함께 응급처치장비 및 구조용품 등의 위치를 미리 확인합니다.

행정안전부

# □ 무인키즈풀




## 보호자 안전수칙 (무인키즈풀)

관리자가 없는 무인키즈풀에서 안전요원은 보호자입니다.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여 사고없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1 항상 눈을 떼지 않기



- ☑ 어린이가 물놀이를 하는 동안 보호자는 가까이에서 위험하게 놀지 않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 ☑ 위험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성인보호자도 물장난에 최소 한명은 함께 들어가주세요.  
(물장이 협소한 경우, 어린이가 보이는 장소에서 머물러주세요.)
- ※ 구명조끼나 튜브를 착용하더라도 사고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 2 이용 전 반드시 수심 확인



- ☑ 물에 들어가기 전 물 깊이를 먼저 확인하고, 어린이의 나이나 키에 맞는 안전한 구역에서 놀게 합니다.

### 3 물놀이 전 안전교육



- ☑ 물놀이 전 충분히 준비운동을 하고 수영복과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 물장 주변 미끄러운 바닥이나 모서리에 다치지 않도록 지도하고 얇은 물에서도 다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교육해주세요.  
(다이빙 금지)

### 4 적절한 휴식시간 갖기



- ☑ 적절한 물놀이 시간(30~40분 전후) 및 10분정도의 수분섭취 및 휴식을 갖도록 합니다
- ☑ 음식·음료 섭취는 휴식시간을 활용해주세요

### 5 응급상황 대비 필요한 사항을 미리 숙지



- ☑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 관리자에게도 연락합니다.
- ☑ 사고 발생 즉시 연락가능한 관리자 연락처와 함께 응급처치장비 및 구조용품 등의 위치를 미리 확인합니다.

